



사람중심의 행복한 성동

문서번호	노인청소년과-375
결재일자	2015.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구청장 방침 제5호

지방행정주사	아동청소년팀장	노인청소년과장	주민생활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이성엽	윤종범	강종식	박기웅	이비오	01/06 정원오
협 조	법률전문관	권설아			
	법제팀장	이상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

2015. 1.



**성 동 구**  
(노인청소년과)



##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

세월호 침몰사고,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판교 지하철 환풍구 사고와 도심 곳곳의 싱크홀 발생과 같은 「사고를 사전에 예방」 하고 어린이·청소년의 「생명안전을 보호」 하기 위한 기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I 추진 근거

-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항(현장학습 안전대책 수립 및 조례제정)
- 청소년 기본법 제47조 제1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 II 제정 이유

- 지난해 세월호 침몰사고와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판교 지하철 환풍구 사고, 도심 곳곳의 싱크홀 발생과 같은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 어린이·청소년의 **안전사고 예방인식 확산**으로 지역사회로부터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 어린이·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Ⅲ 주 요 내 용

#### ○ 조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

#### ○ 주요내용

- 목 적(안 제1조)
  - 어린이·청소년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
- 정 의(안 제2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정의
- 구청장의 책무 및 지역사회의 책무(안 제3조, 제4조)
  -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 일상생활에서 어린이·청소년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
-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안 제6조)
- 교육 및 홍보(안 제7조)
- 구호활동(안 제8조) 등
  - 어린이·청소년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모든 사건, 사고로 인한 응급상황 발생시 등

### Ⅳ 추 진 일 정

- 입법예고 ----- 2015. 1.
- 법제심사 및 숙독회의 ----- 2015. 1.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5. 2.
- 조례안 상정 ----- 2015. 2.
- 시행 ----- 2015. 3.

별첨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안 1부.